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6
------	-----

2022. 11.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11.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영상산업지원 사업은 영화의 기획·개발부터 제작까지 지원하는 영화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 전용관 운영, 시사회 개최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영상산업 육성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나. 영상산업 분야 관련 인프라 조성은 물론 전문성 및 경험과 기술 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 현재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2022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통합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영상산업지원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상진흥조례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서울은 영화·영상관련 인력 및 인프라 조성되어 있어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 영화의 제작단계 등 기획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독립영화의 제작지원, 촬영지원 등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수탁기관 필요함
- 또한 해당 사무는 기획개발부터 프로덕션 지원, 상영 및 배급 시스템 등 영화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 요구됨

다. 위탁 대상 사무

- 영화창작공간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
- 영화창작공간 입주 대상자 모집, 심사 등 입주자 선정·지원
-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
- 기타 공공 창작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
-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및 시사회 개최지원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라. 위탁개요

- 소재지 :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
- 규모 : 전용면적 4,588㎡(1, 2, 5, 7, 8층)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운영인력 : 7명(팀장 2, 차장 1, 대리 1, 주임 3)

마.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

사. 소요예산 : 3,311백만원(2023년)

- 인건비 334백만원, 운영비 1,191백만원, 사업비 1,78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2.10.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상진흥 조례 제3조,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022. 9. 2.)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위탁기간 만료(2022.12.)를 앞둔 ‘영화창작공간 운영’ 과 ‘독립영화 활성화’ 의 통합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통합위탁 대상사무의 현황과 추진 배경

- 서울시는 서울영상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육성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서울시 영상산업 육성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세부사업	2023예산안	추진방식	수행기관
영상산업 지원	영상진흥위원회 운영 등	8,000	서울시	-
	총무로영상센터 운영(임차료 포함)	356,848	민간위탁	(사)서울영상위원회
	영화창작공간 운영	1,682,836	민간위탁	(사)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047,782	민간위탁	(사)서울영상위원회
	합계	3,095,466		
영상물 서울	서울촬영 지원	523,400	민간보조	(사)서울영상위원회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서울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	722,980	민간보조	(사)서울영상위원회
	합계	1,246,380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영화제 개최 관련 간담회 등 추진	2,000	서울시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1,000,000	민간보조	(사)서울영상위원회
	합계	1,002,000		

- 이 중 (사)서울영상위원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화창작공간 운영’ 과 ‘독립영화 활성화’ 를 단일한 사무로 통합해 2023년부터 공모로 수탁기관을 선정·추진할 예정임.
- ‘영화창작공간 운영’ 의 2023년 예산은 16억 8천 2백만원으로, 영화 감독과 PD,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사에게 창작과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기획개발비, 소재 개발을 위한 강좌, 멘토링 등을 지원함.

<영화창작공간 개요>

- 소재지 : 마포구 성암로 330(DMC 첨단산업센터, 4,576㎡)
- 입주대상 : 영화감독·PD 58명, 작가 42명, 영화제작사 17팀
- 주요사업
 - 안정적인 창작·제작 공간 제공
 - 입주자에게 소재 개발을 위한 강좌, 현장 견학,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영화감독·PD·시나리오 작가 대상 공모를 통한 기획·개발비 지원
- 공간구성

구 분	기획개발 공간			제작 공간	
	1층(작가존)	2층(감독존)	8층(프로듀스존)	5층(프로덕션오피스)	2층(오피스)
규 모	653㎡	997㎡	1,709㎡	1,027㎡	185㎡
시 설 구 성	집필실, 자료실 등	창작실, 세미나실 등	창작실, 비즈니스지원 실 등	제작실, 회의실 등	개별 사무실 등
이용자	시나리오 작가(42명)	감독·PD(18명)	감독·PD(40명)	제작사(12팀)	제작사(5팀)

- ‘독립영화 활성화’ 의 2023년 예산은 10억 4천 8백만원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독립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영화의 시사회와 개봉을 지원하여 영상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함.

- ‘영화창작공간 운영’ 과 ‘독립영화 활성화’ 는 모두 2022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지적을 반영해 ‘영상산업 지원’ 으로 통합위탁을 하게 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관련 지적사항>

- 영화창작공간 운영 위탁사무는 이전협약의 경우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위탁사무와 통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분리됨에 따라 인사, 예산 등 조직 운영 차원에서 유사한 업무를 2명의 담당자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시 통합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2002년에 설립된 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촬영 지원’ (2002년)을 시작으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2004년), ‘독립영화 활성화’ (2007년), ‘영화창작공간 운영’ (2008년) 등을 포함해 서울시 영상산업 관련 사업 대부분을 수탁 또는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음.

<서울영상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2002. 2. 19.)
- 설립목적 : 국내·외 영화촬영 및 제작지원, 서울 영상산업 관련 사업 추진
- 소재지 : DMC첨단산업센터 내
 -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
- 대표 : 이장호(영화감독)
- 조직구성 : 임원 18인 / 1처 6팀 1소(24인)

-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서울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 분야의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 위탁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직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 긴밀한 협력 관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위탁기간(2020.4.1.~2022.12.31.)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체로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
 - ‘영화창작공간 운영’은 입주자 작품화와 기획개발 지원에서 목표와 근접한 실적을 달성함.

<영화창작공간 운영의 추진목표와 실적>

사업명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입주자 작품화	83편	79편	95%	79편	81편	103%
기획개발 지원	16편	16편	100%	20편	19편	95%

- ‘독립영화 활성화’ 는 제작 지원 건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당초 목표치를 상회함.

<독립영화 활성화의 추진목표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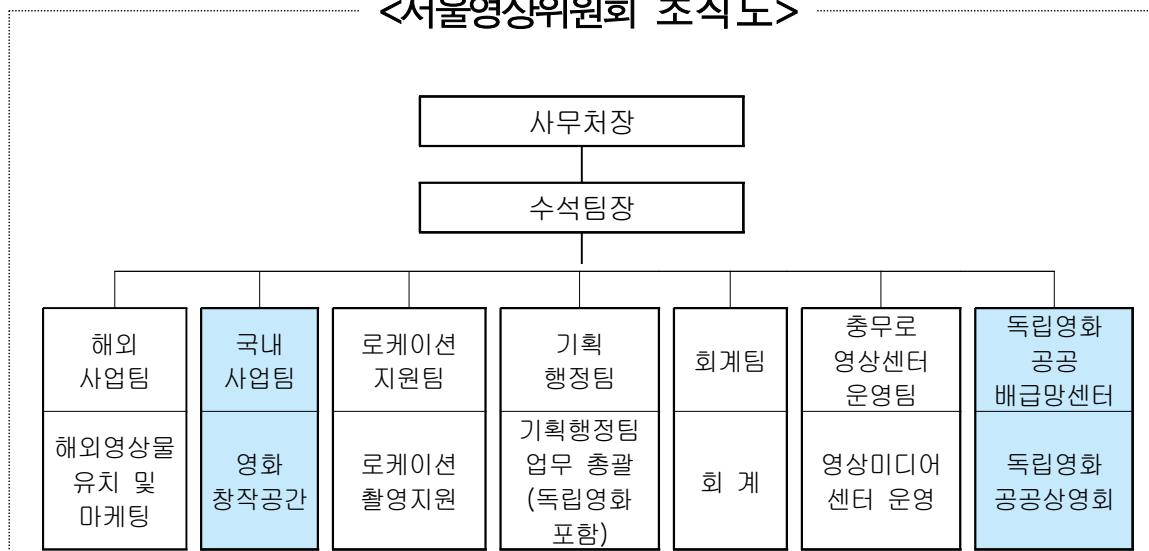
사업명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달성률 (%)
제작지원	제작지원 건수	30	28	93.3	30	27	90
	개봉 및 영화제 상영(수상)	개봉 5편	개봉 7편	140	개봉 5편	개봉 7편	140
		영화제 15편	영화제 19편	126.7	영화제 15편	영화제 15편	100
공공상영회	상영회 횟수	85회	85회	100.0	182회	182회	100
운영성과	상영회 관람객 수	306명	553명	180.7	1,071명	1,859명	173.6
전용관 운영지원	관람객 수	독립 8,240명	독립 15,688명	190.4	독립 13,478명	독립 16,496명	122.4
		고전 9,000명	고전 24,807명	274.7	고전 14,769명	고전 27,495명	186.2

-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영상 콘텐츠 창작자와 상업성이 부족한 독립영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성·창의성 있는 기관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음.
- 한편,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사에서 “2개의 사무를 통합 위탁하는 취지에 맞게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시 소유시설의 임대료 감면 검토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조건으로 통과함.
- 이에 서울시(미디어콘텐츠산업과)는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에서 중복되는 2천 4백만원을 감액하고, 향후 임대계약 갱신시에 임대료

와 임대보증금의 감면·조정을 시도하겠다는 후속 계획을 수립함.

- 하지만,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주로 수행하는 DMC첨단산업센터는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시설로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50% 수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조정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두 개의 사무가 통합되는 만큼 신규수탁 가능성이 높은 서울 영상위원회의 담당팀 역시 하나의 팀으로 통·폐합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예산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됨.

<서울영상위원회 조직도>



- 또한, 서울영상위원회가 오랜 기간 서울시의 영상산업 지원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조직과 기능이 서울시의 하부조직화 되고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퇴색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구 초동에 위치한 ‘서울시네마테크’가 건립되면(2024년 3월 예정)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과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여 서울 영상위원회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개요

- ▶ 위치 : 중구 마른대로 38(초동 공영주차장 부지)
- ▶ 건축규모 : 부지면적 804.1㎡, 연면적 약 4,806㎡, 지하 3층~지상 10층
- ▶ 공간구성 : 다양한 분야의 영화 상영관, 영상 거점공간, 미디어센터, 전시실 등
- ▶ 사업기간 : 2015. 7. ~ 2024. 3.
- ▶ 2022년 예산현액 : 91억 6천 7백만원
 - ※ 총사업비: 264억 8천 2백만원(국비 1억 6천 1백만원, 시비 263억 2천 1백만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영상산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영상산업지원 사업은 영화의 기획·개발부터 제작까지 지원하는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 전용관 운영, 시사회 개최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영상산업 육성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 나. 영상산업 분야 관련 인프라 조성은 물론 전문성 및 경험과 기술 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다. 현재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22.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통합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영상산업지원 사무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상진흥조례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서울은 영화·영상관련 인력 및 인프라 조성되어 있어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 영화의 제작단계 등 기획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독립영화의 제작지원, 촬영지원 등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수탁기관 필요함
- 또한 해당 사무는 기획개발부터 프로덕션 지원, 상영 및 배급시스템 등 영화·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 요구됨

다. 위탁 대상 사무

- 영화창작공간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
- 영화창작공간 입주 대상자 모집, 심사 등 입주자 선정·지원
-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
- 기타 공공 창작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
-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및 시사회 개최지원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라. 위탁개요

- 소재지 :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
- 규모 : 전용면적 4,588㎡(1, 2, 5, 7, 8층)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운영인력 : 7명(팀장 2, 차장 1, 대리 1, 주임 3)

마.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

사. 소요예산 : 3,311백만원('23년)

- 인건비 334백만원, 운영비 1,191백만원, 사업비 1,78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2.10.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상진흥 조례 제3조, 제10조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 9. 2.)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미디어산업지원팀 김문희(☎2133-9221)